



캐나다,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직접배상제도 확대

정인영 연구원

요약

캐나다 Alberta주는 2022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직접배상(Direct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DCPD)제도를 시행함. DCPD제도는 간편·신속한 보험금 청구, 자동차보험 비용안정화를 통한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DCPD제도 도입이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의 공정한 보상 한계나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캐나다 Alberta주(州)는 2022년 1월 1일 부로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직접배상(Direct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DCPD)제도를 시행함¹⁾
 - 그동안 Alberta주는 과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대인 및 대물 피해 모두를 배상하는 과실시스템(At-fault system)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제도개정으로 제3자 책임보험의 대물배상에 한해 DCPD제도가 적용됨²⁾
 - Alberta주의 DCPD제도는 대물배상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과실운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함
- DCPD제도는 자동차 충돌사고 시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대물피해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직접 배상받는 형태로, 소위 노폴트제도(No-Fault)로 불리는 무과실책임보험제도임³⁾
 - 100% 무과실인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공제액(Deductible) 없이 전액 보상받음
 - 부분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⁴⁾담보인 충돌보장(Collision Coverage) 가입 유무에 따라 자동차수리비(대물피해) 배상 주체가 달라짐⁵⁾

- 1) 캐나다는 주(州)별로 독자적인 자동차보험제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과실보험(No-Fault)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Ontario, Nova Scotia, New Brunswick, Quebec, Prince Edward Island, British Columbia 등임(Driving(2021. 7. 30), "What is No-fault Auto Insurance"; Canadian Underwriter(2021. 12. 13), "Direct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Coming to Alberta"; Insurance Bureau of Canada(2021), "Direct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DCPD) Insurance")
- 2) Legislative Assembly of Alberta(2020), Bill 41. Insurance (Enhancing Driver Affordability and Care) Amendment Act (<https://www.assembly.ab.ca/assembly-business/bills/bill?billinfoid=11879&from=bills>)
- 3)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소송 남용과 과실입증 관련 분쟁으로 보상종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 보상금액 불충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한도까지는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상대방 과실과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No-Fault 제도가 도입됨(이용균·김미향(2019), 「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 4) Alberta주의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담보는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자기손해(Accident Benefits), 대물피해 직접배상(DCPD) 등이며, 임의가입 담보에는 차량충돌(Collision)과 기타종합(Comprehensive) 등이 있음(Government of Alberta(2021), Automobile Insurance Reform(https://airb.alberta.ca/drivers/getting_insurance.aspx))

- 임의가입 담보인 차량충돌(Collision)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 책임이 100%이더라도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처리함
- 임의가입 담보인 차량충돌(Collision)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DCPD제도는 간편·신속한 보험금 청구, 자동차보험 비용안정화를 통한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⁶⁾

- 종전의 과실책임주의 제도에서는 차량사고 수리비용 배분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의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함에 따라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나 과다비용 유발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Alberta주는 캐나다에서 British Columbia와 Ontario주에 이어 자동차보험료('20년 기준 연평균 \$1,514)가 높은 주로,⁷⁾ 최근 들어서도 높은 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그림 1〉 참조)
 - 이에 Alberta 주정부는 운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보험업계, 법률,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자문위원회를 결성하고 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함⁸⁾

〈그림 1〉 Alberta주의 연간 자동차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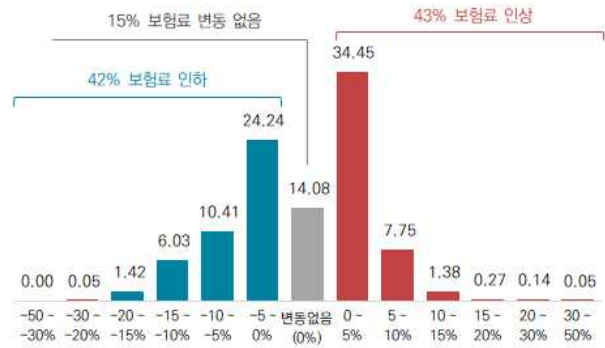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2021)

〈그림 2〉 DCPD제도 도입 후 보험료 변화 전망

(단위: %)



주: 보험료 인상·인하 구간에 속한 인원 비중임
 자료: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2021)

5) <https://airb.alberta.ca/drivers/dcpd/direct-compensation-for-property-damage.aspx>
 6) Automobile Insurance Advisory Committee(2021), "Report on Fundamental Reform of the Alberta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System"
 7) CTV(2020. 10. 29), "Alberta Government Tables Auto Insurance Bill, Committee Recommends Adopting No-fault Insurance"
 8) Government of Alberta(2019), "Automobile Insurance Advisory Committee"

○ 캐나다 보험감독청(CIB)은 DCPD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체적인 요율 인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⁹⁾

- DCPD제도는 기존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과 동일하고, 보험금 지불자만 변경된 형태임¹⁰⁾
- 캐나다 보험감독청은 제도 변화로 인한 보험회사 수익은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전반적인 요율 인상은 없다고 밝힘
 - 차량 충돌사고에서 100% 과실이 없는 경우 DCPD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으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DCPD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요율변경 신고 결과, 자동차 운전자의 15%는 보험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42%는 보험료 인하, 34%는 0~5% 사이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함(그림 2) 참조)

○ DCPD제도 도입이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의 공정한 보상 한계나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¹¹⁾

- DCPD제도 시행으로 본인이 보유한 차량의 수리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에게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고가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할 확률 및 수리비용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실제로 저가차량 운전자는 고가차량 운전자의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구조임¹²⁾
- 한편, 무과실 자동차보험 책임제도 도입에 따라 피해자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소송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음¹³⁾

9)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2021), "2021 Market & Trends Report"

10) 부분과실로 간주되는 차량충돌 사고에 연루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임의가입 형태로 충돌보장(Collision Coverage)에 가입한 사람은 차량손실에 대한 보상을 DCPD 보상과 Collision 보상으로 구분해서 적용함

11)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 Direct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DCPD)

12) CTV(2021. 12. 30) "Alberta's auto insurance changes set to impact premium calculations and claims process in 2022"

13) CBC(2020. 10. 31), "No-fault Auto Insurance Should be no-go in Alberta, Lawyers Say"; Canadian Underwriter(2020. 3. 10), "Is Alberta Next for No-fault Insurance?"; Global News(2020. 10. 29), "Panel Recommends No-fault Auto Insurance to Address Rising, Costly Premiums for Albertans"